

#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11) 상정
-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11)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예산법무과장 권 희 춘)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 공포·2006. 1. 1. 시행)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26호, 2005. 12. 30.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조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교부결정통지 및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정변경에 따른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보조사업의 신고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에서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위배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제7조의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시장은 교부결정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따른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때
2.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공에 기여하지 아니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9호
의결 년월일	2008. 12. 22. (제148회)

제출년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 공포 · 2006. 1. 1. 시행)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26호, 2005. 12. 30. 공포 ·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보조금의 보조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및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사정변경에 따른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용도 외 시용금지 및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보조사업의 신고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칙 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에서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위배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제7조의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시장은 교부결정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따른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때
2.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공에 기여하지 아니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조례)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정 1988. 05. 10 조례 제8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에서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물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부칙 (1988.05.10 제8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1984. 2. 13, 조례 제63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